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광향기 의원 외 21명

나. 의안번호 : 제3009호

다. 제출일자 : 2025. 8. 11.

라. 회부일자 : 2025. 8. 14.

2. 제안사유

- 최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타 업종 이탈, 신규 종사자 유입 저조 등 택시 기사 확보 어려움으로 인해 택시 가동률이 저하되는 등 일반택시 사업자의 경영난 가중이 계속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일반택시 운송사업 경영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25.07.28.)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보유 차고의 최저 면적 기준이 완화되었음

- 이에 따라 서울시 조례 역시 상위법령에 맞춘 완화 기준 개정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필요한 보유 차고 최저 면적 경감 기준을 종전 40퍼센트에서 앞으로는 50퍼센트 범위로 확대해 경영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보유 차고 최저 면적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비고 제7호에 따라 50퍼센트 경감함(안제18조 신설)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참조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8. 20. ~ 2025. 8. 24.

- 제출의견 : 없음

- 라. 관계기관 의견¹⁾

- 제출의견 : 원안가결

1) 택시정책과-30538호('25.8.21.)

- 2010년 경감률 40% 적용 당시에 비해 2025년 현재 휴업 차량은 대폭 증가하였으며,
 - 법인택시 휴업대수 1,571대('10년) → 7,047대('25년)로 약 4.5배 증가
 - 차량등록율 68.6%로 낮아짐(면허 22,567대, 운행 15,492대)
- 1인1차제 확산, 차고지밖 밤샘주차(교대) 허용 등 운행방식 및 제도변화에 따라 차고지 사용률이 감소함
- 또한, 정비사업 확대와 민원 등의 사유로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현행 차고지 면적기준 경감률을 50% 범위로 확대하여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음
-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서울시 조례에 차고지 면적기준을 완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본 개정안에 원안 동의함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일반택시(법인택시) 운송사업에 필요한 보유 차고지의 최저 면적 기준을 경감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비고 제7호의 개정사항²⁾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인택시의 경영난 해소와 일반택시(법인택시) 사업자가 변화된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³⁾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차

-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7.28.] [국토교통부령 제1509호, 2025.7.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인택시 사업자가 변화된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87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면허기준의 재검토 필요
 - 주요내용: 지역별 법인 택시기사 감소율과 운행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의 차고지 면적 경감 범위 완화
 - (차고지 면적) 법인택시 차량 등록률(77%) 및 차고지 밖 밤샘주차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의 경감 허용 범위를 40% → 50%로 확대
 - 입법효과: 택시산업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법인택시의 가동률 향상 및 경영난 해소효과 기대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면허 등의 기준) 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 등록기준 대수,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수송력 공급계획의 수립·공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최저 면허기준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운송 부대시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별표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4조제1항 관련)
2.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
- 비고 7.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면적은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유 차고의 최저 면적 기준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고지를 확보하되 일반택시(법인택시) 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 면적은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보유 차고 최저 면적기준의 40퍼센트 범위에서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는 관련 기준에 따라 법령의 차고지 확보 기준($13m^2 \sim 15m^2$)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25년 7월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비고 제7호 개정⁴⁾으로 일반택시(법인택시) 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지 확보 면적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차고의 최저 면적 기준을 50퍼센트 범위에서 경감'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며 동 개정조례안은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임

※ 일반택시 1대당 보유차고 면적기준 경감안

서울시 현행(대당면적)	개정안 적용시(대당면적)
$8m^2 \sim 15m^2$ (40퍼센트 경감률 적용)	$6.5m^2 \sim 15m^2$ (50퍼센트 경감률 적용)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09호, 2025.7.28. 시행>

[별표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4조제1항 관련)

(제2호 비고 제7호) 일반택시운송사업이 필요한 차고면적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차고의 최저 면적기준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서울시는 지난 2010년 일반택시(법인택시) 운송사업 보유차고의 최저 면적기준을 기존 25퍼센트에서 40퍼센트($8m^2 \sim 15m^2$)로 확대하여 현재까지 운영⁵⁾하고 있으나

2010년에 비해 2025년 현재 휴업(말소)차량이 증가⁶⁾하였고, 2023년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일반택시(법인택시) ‘차고지 밖 밤샘주차(교대)가 허용⁷⁾’됨에 따라 차고지 사용률은 감소한 상황임

- 그간 일반택시(법인택시) 업계에서는 법인택시의 가동률을 향상시키고 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건의한 결과 2025년 7월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보유 차고의

5) 일반택시운송사업 보유차고 면적기준 경감계획(서울시 운수물류담당관-3274, 2010.2.3.)

- 주요내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09.12.2)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보유차고 면적기준 경감률 확대(25%→40%)에 따라 서울시 차고지 확보 기준을 완화
※ (기존) $10m^2 \sim 15m^2$ (25% 경감률 적용) ⇒ (변경) $8m^2 \sim 15m^2$ (40% 경감률 적용)

6) 일반택시(법인택시) 일반현황 (서울시 내부자료)

구 분	택시회사수 (사)	면허대수 (대)	운전자수 (명)	등록대수 (대)	휴업대수 (대)	평균연령 (세)
18.12월	254	22,603	31,251	19,712	2,891	-
19.12월	254	22,603	30,527	19,270	3,333	-
20.12월	254	22,603	24,507	17,287	5,316	-
21.12월	254	22,603	20,888	15,628	5,842	61.0
22.12월	254	22,603	20,599	15,323	6,121	62.8
23.12월	254	22,603	20,430	15,518	6,148	63.1
24.12월	254	22,603	20,358	15,307	5,669	63.1
25.7월말	252	22,567	20,396	15,638	5,672	62.6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법인택시 차고지 외 밤샘주차 허용 사항

- 2023.3.14. 국무회의 개정안 의결 (즉시시행)
- 기존: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 종료 후 차고지(법인택시 회사)로 복귀하여, 차고지에서 밤샘주차(00시~04시) 및 근무교대가 이루어지는 등 택시 운행효율이 저하되고 기사의 출퇴근 불편 가중
- 변경: 법인택시가 동일한 차량을 2일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던 경우 기사의 거주지 주변 등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의 밤샘주차 허용하여 심야 택시 운행효율 증대

최저 면적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조례 개정안은 택시 산업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교통운영 효율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최근 일반택시(법인택시)의 차종별 현황⁸⁾을 살펴보면 중형차 비율이 약 93.4%에 이르고 중형차 1대당 최소 면적이 약 9.5㎡임을 감안할 때 동 조례개정에 따라 차고지 면적기준을 조정할 경우 실 주차 공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불법주정차 등 교통 불편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8) 법인택시 차종별 현황 (서울시 내부자료)

(2025년 7월 말 기준)

차 종	중형	고급	대형	승합	합계
그랜저, 소나타, 아이오닉, K5, SM6 등	14,611	-	-	-	14,611
카니발, G90 등	-	354	-	-	354
스타리아 등	-	-	-	673	673
등록차량 계	14,611 (93.4%)	354 (2.3%)	-	673 (4.3%)	15,638 (100%)

※ 차량치수(전장/전폭) (중형: 그랜저, 고급: G90, 승합: 스타리아 기준)

- 그랜저 : 5,035mm / 1,880mm (약 9.5㎡)
- G90 : 5,275mm / 1,930mm (약 10.2㎡)
- 스타리아 : 5,255mm / 1,995mm (약 10.5㎡)